

2023

# 안전·환경 교육과정/사업안내



환경안전교육원

Korea Environmental and  
Safety Institute

Greeting

# 환경안전교육원 은

환경안전교육, 산업안전교육, 환경·안전분야 진단 등의 사업을  
주목적으로 환경부에서 허가한 비영리법인입니다.

환경·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기관은  
고객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힘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교육원 임직원 일동

# Contents

## 01 교육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_\_\_\_\_ **5**

### 1.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신규/보수)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신규/보수)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직무교육(신규/보수)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보수)

### 2. 안전교육

-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제조업/서비스업)
- 위험성평가 담당자 안전교육(제조업/서비스업)

- **중대재해처벌법** \_\_\_\_\_ **11**

- 경영책임자, 최고안전책임자교육
- 안전보건책임자, 관리자교육

- **화학물질관리법** \_\_\_\_\_ **13**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정기검사교육
-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 02 사업안내

- **환경안전분야 컨설팅** \_\_\_\_\_ **15**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4. 유해화학물질 환경청 인허가

- **산업안전분야 컨설팅** \_\_\_\_\_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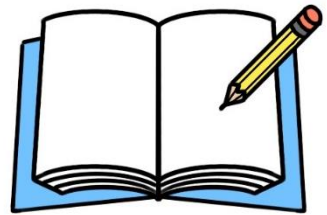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2. 공정안전보고서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4. 위험성평가
5. 자율안전확인신고
6. 방폭안전진단
7.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01 교육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지위에 선임된 사람이 업무수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 1.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32조)

교육신청 : <https://www.dutycenter.net/>

대상자	업종	이수시간	관련법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신규/보수)	건설업, 제조업 및 기타업	6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신규/보수)	건설업, 제조업 및 기타업	34/24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직무교육(신규/보수)	-	34/24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보수)	제조업 및 기타업	8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

## 2.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교육신청 : <http://www.koesti.or.kr>

대상자	업종	이수시간	관련법령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제조업 및 기타업	16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위험성평가 담당자 안전교육	제조업	16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 24조 3항
	서비스업	8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교육은 요청시 사업장별 출장교육이 가능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신규)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안전보건 경영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교육시간	6시간/1일 (09:00~16:00)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최초 선임된 자 (3개월 이내)
교육내용	-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교육 신청

-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www.dutycenter.net](http://www.dutycenter.net)) 회원가입 후 재단법인 환경안전교육원 검색 교육신청

### Q&A

Q.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입니다.

Q.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선임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하며, 선임 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보수)

- ▶ 신규교육을 받고 2년이 지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수교육으로 리더십과 안전경영방법을 교육하여 사업장 내 효과적인 안전 경영을 가능토록 하는 과정

교육시간	6시간/1일 (09:00~16:00)
교육대상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2년이 지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개월 이내)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 신청

-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www.dutycenter.net](http://www.dutycenter.net)) 회원가입 후 재단법인 환경안전교육원 검색 교육신청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신규)

- 안전관리자가 사업장 내 전반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하여 직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자율안전관리 업무를 가능토록 하는 과정

교육시간	34시간/ 5일
교육대상	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된 자 (3개월 이내)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li> <li>-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li> <li>-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li> <li>-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li> <li>- 안전점검 · 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li> <li>-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 예방실무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li> <li>-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li> <li>-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li> <li>-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li> </ul>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보수)

- 안전관리자가 사업장내 전반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하여 직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자율안전관리 업무를 가능토록 하는 과정

교육시간	24시간/ 3일
교육대상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2년이 지난 안전관리자(3개월 이내)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li> <li>-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평가 · 실무에 관한 사항</li> <li>-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li> <li>-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li> <li>-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li> <li>-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li> </ul>

### 교육 신청

-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 [www.dutycenter.net](http://www.dutycenter.net) ) 회원가입 후 재단법인 환경안전교육원 검색 교육신청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직무교육 (신규)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기술지도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신의 안전보건관련 전문지식 및 사례습득을 통하여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과정

교육시간	34시간/ 5일
교육대상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리 위탁업무 신규 종사자 (3개월 이내)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li> <li>-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li> <li>-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li> <li>-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li> <li>- 안전점검 · 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li> <li>-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 예방실무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li> <li>-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li> <li>-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li> <li>-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li> </ul>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직무교육 (보수)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기술지도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신의 안전보건관련 전문지식 및 사례습득을 통하여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과정

교육시간	24시간/3일
교육대상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2년이 지난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3개월 이내)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li> <li>-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평가 · 실무에 관한 사항</li> <li>-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li> <li>-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li> <li>-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li> <li>-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li> </ul>

### 교육 신청

-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 [www.dutycenter.net](http://www.dutycenter.net) ) 회원가입 후 재단법인 환경안전교육원 검색 교육신청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 (보수)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대한 직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업무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사업장 내 자율안전관리 업무를 가능토록 하는 과정

교육시간	8시간/1일 (09:00~18:00)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2년이 지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3개월 이내)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li> <li>-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li> <li>-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li> <li>-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 교육 신청

-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www.dutycenter.net](http://www.dutycenter.net)) 회원가입 후 재단법인 환경안전교육원 검색 교육신청

### Q&A

#### Q.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
  - 대상업종 : 제조업/임업/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환경정화 및 복원업

#### Q.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 Q.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건강진단,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통계의 기록 및 유지, 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Q. 상시근로자수 산정

-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수를 산정해야 함

##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제조업 및 기타업)

-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갖춰야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함과 동시에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

교육시간	16시간/ 2일
교육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상의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사람</li> <li>•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li> </ul>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li> <li>-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li> <li>-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li> <li>-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li> <li>-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li> </ul>

## 위험성평가 담당자 안전교육

- 위험성평가 개요, 단계별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등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실무역량 배양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을 습득하는 과정

교육시간	16시간/2일(제조업) , 8시간/1일 (서비스업)
교육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성평가 업무담당자</li> </ul>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성평가 개요</li> <li>-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li> <li>-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li> <li>- 위험성평가 실시규정</li> <li>- 업종별 위험성평가1</li> <li>- 업종별 위험성평가2</li> </ul>

### 교육 신청

- 환경안전교육원 홈페이지([www.koesti.or.kr](http://www.koesti.or.kr))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 Q&A

Q.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시 관리감독자교육 이수여부

- 관리감독자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관한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시간만큼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은 제조업 16시간(이론 8시간, 실습 8시간), 기타업종 8시간(이론 8시간)으로 운영됨

Q.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여부[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22.08.31, 기재부) 제15조 위험성평가]

- 10 - 실시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체 공공기관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대재해란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이상 발생



대상자	이수시간	교육방법
경영책임자, 최고안전책임자	4	집체
안전보건책임자, 관리자	16	

## 경영책임자, 최고안전책임자 교육

-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습득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인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과정

교육시간	4시간/ 1일
교육대상	사업을 대표 ·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재해처벌법 개요</li> <li>-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li> <li>-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분야별 적용</li> </ul>

- 교육 신청** • 환경안전교육원 홈페이지([www.koesti.or.kr](http://www.koesti.or.kr))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 안전보건책임자, 관리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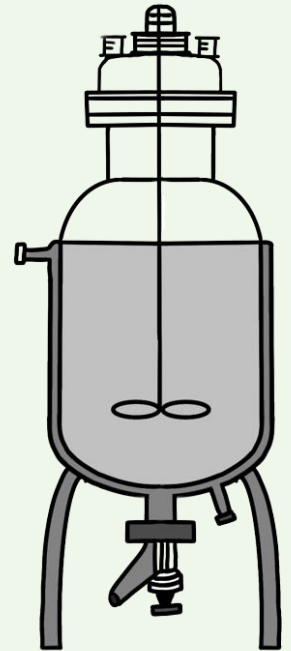
-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운영을 돕는 실무 교육과정

교육시간	16시간/ 2일
교육대상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 담당자, 전담조직 내 담당자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재해처벌법 개요</li> <li>-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li> <li>- 안전보건경영시스템</li> <li>-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분야별 적용</li> <li>- 주요의무사항 이행</li> </ul>

- 교육 신청** • 환경안전교육원 홈페이지([www.koesti.or.kr](http://www.koesti.or.kr))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정명	관련법령	이수 시간	교육 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정기검사교육	화학물질관리법	16	집체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화학물질관리법	2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정기검사교육

-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 시 검사기관에서 시행하는 설치, 정기검사에 대한 사업장 관리자의 전문성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과정

교육시간	16시간/ 2일
교육대상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급시설의 개요 및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li> <li>-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li> <li>- 사전서면 검사자료 사례 및 작성방법</li> <li>-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우수사례</li> <li>- 화학사고 사례 및 발생 시 조치요령</li> </ul>

- 교육 신청** • 환경안전교육원 홈페이지([www.koesti.or.kr](http://www.koesti.or.kr))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 교육·훈련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위험성 제고 및 누출 등의 사고 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숙지를 위한 과정

교육시간	2시간/ 1일
교육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li> <li>- 유해화학물질 취급방법</li> <li>- 화학사고대비·대응 및 누출 시 응급조치</li> <li>- 화학물질의 유해성분류 및 표시방법</li> <li>-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이해</li> </ul>

- 교육 신청** • 환경안전교육원 홈페이지([www.koesti.or.kr](http://www.koesti.or.kr))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 02 사업안내

환경안전분야 컨설팅

산업안전분야 컨설팅



## | 환경안전분야 컨설팅

###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 2.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 취급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이유로 총괄 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에서 검사 및 안전 진단을 받도록 하는 제도

### 4. 유해화학물질 환경청 인허가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지방환경관서에 영업허가를 받는 제도





# 1. 화학사고관리에방계획서(화관서)

제출대상 사업장	1군 사업장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2군 사업장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설비 대상

구분	분류	시기,주기	
		규정수량	소량기준
개요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사업장 기준</p> <p>상위규정수량 (UT)</p> <p>↓ 1군</p> <p>↑ 2군</p> <p>하위규정수량 (LT)</p> <p>↓ 면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계획서 작성 내용</p> <p><b>1군</b> [기본정보] [장외평가정보] [내·외부 비상대응계획] [지역사회고지]</p> <p><b>2군</b> [기본정보] [장외평가정보] [내부 비상대응계획]</p>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단위설비 기준</p> <p>↑ 시나리오 대상</p> <p>시나리오 소량기준</p> <p>↓ 시나리오 제외</p> </div>
	신청 기준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li> </ul>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물질별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위설비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li> </ul>

## 제출시기

### 신규제출

- 제출시기 : 설치검사개시일 60일 이전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장으로 최대보유량산정에 따라 1군 또는 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 (규칙 별표4 비고 제2호)

### 변경제출

- 제출시기 : 변경완료일 30일 이전 제출
- 아래의 변경으로 인해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 ①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 ②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③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④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 ⑤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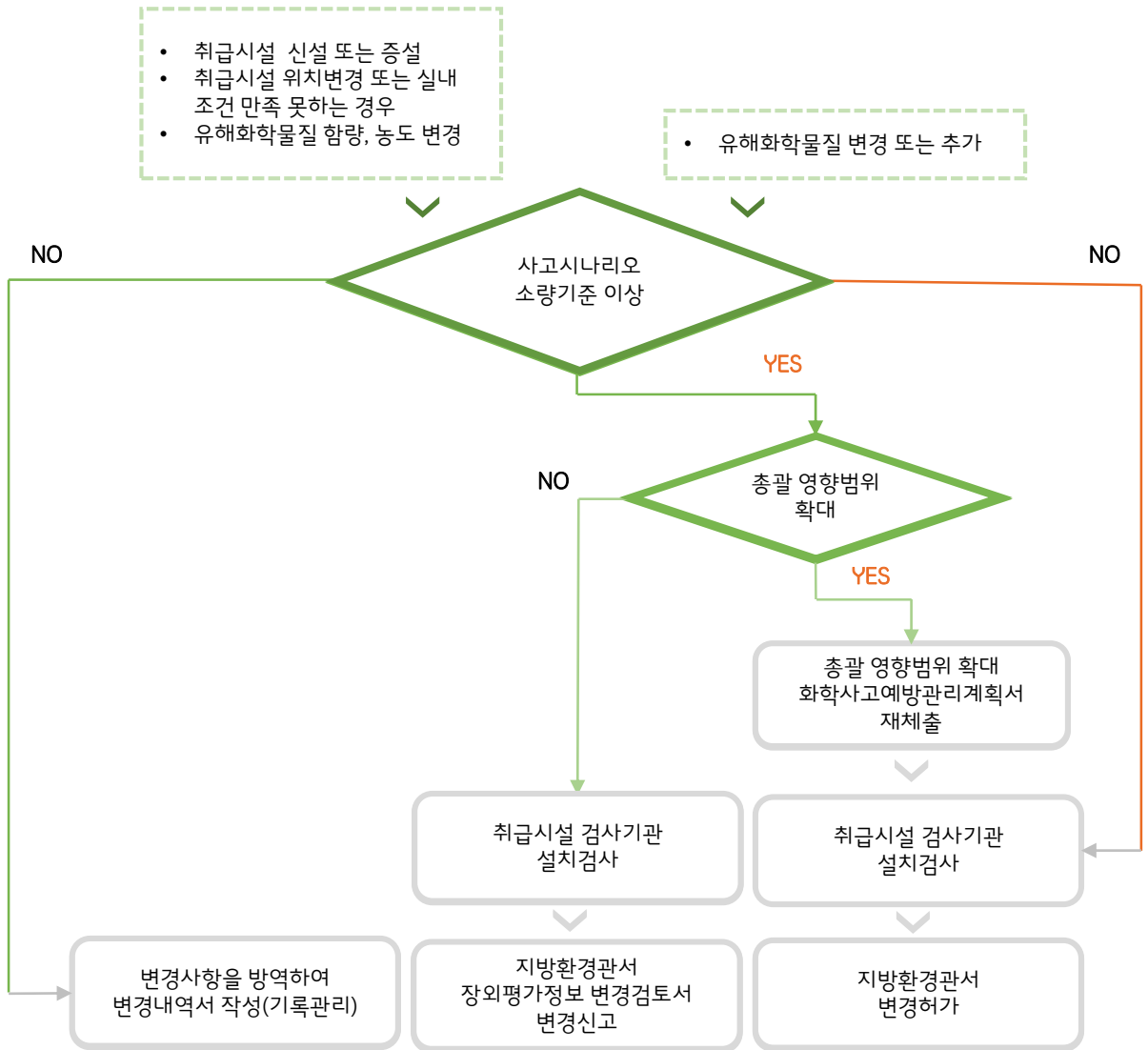
※총괄영향범위 :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각을 연결한 구역

### 재제출

- 1·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서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통보 후 5년 재제출시점이 도래하여 예방 계획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법 부칙 제3조)
-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5년 동안 변경제출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작성 규정 제11조)
  - ▶최초 적합통보를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제출
    -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변경 제출한 경우 (작성 규정 제11조)
  - ▶변경 제출 후 적합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 2.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제출 판단



※ 별지 제2호 서식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 ]

[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 (제9조 및 제19조 관련) ]

성상	유해성 분류	규정 수량
고체	유해성 구분 없음	2,000kg
액체	유해성 구분 없음	400kg
기체	독성구분*1	5kg
	독성구분 2	5kg
	독성구분 3	100kg

- 「화학물질의 분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 건강유해성 급성 독성구분
- 급성 독성이 없거나 급성 독성이 구분4인 경우는 100kg 적용

###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검사 및 안전진단의시기/주기

구분		시기/주기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 검사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마다(최초 정기검사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최초 정기검사 전후 30일 이내)	
수시 검사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학사고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화학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안전 진단	설치/정기검사 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등급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4년
		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
작성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서 하위 규정수량 미만 등	매 12년		

#### 검사기관

기관명	관할구역
한국환경공단	전국 ( <a href="https://www.safechem.or.kr/">https://www.safechem.or.kr/</a>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국 ( <a href="https://www.kosha.or.kr/cheminsp/">https://www.kosha.or.kr/cheminsp/</a>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국 ( <a href="https://cyber.kgs.or.kr/">https://cyber.kgs.or.kr/</a> )

#### 검사방법

검사 신청 시 사전서면검사 자료 제출 후 현장 확인 검사 실시

#### 검사 및 안전진단 절차



## 4. 유해화학물질 환경청인허가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 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 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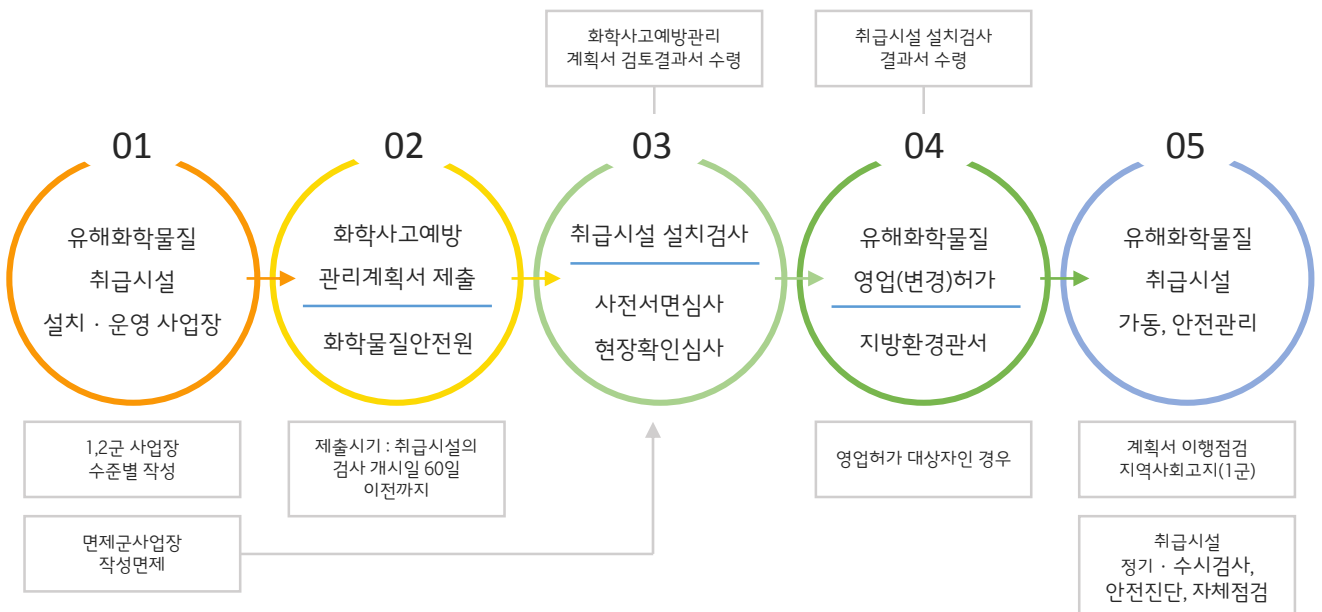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 선박, 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에 따른 영업허가대상

사업장 위치	물질 구분	연간 사용량
상수원 보호구역 밖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제외)	연간 120톤 이상
특별 대책지역 내		연간 60톤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제외), 전용공업지역 내		연간 240톤 이상
상수원 보호구역 내, 특별 대책 지역 밖	제한물질	연간 60톤 이상
상수원 보호구역 내, 특별 대책 지역 밖	유독물질 겸 사고대비물질	연간 100kg 이상
상수원 보호구역 내, 특별 대책 지역 밖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	소량취급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미작성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무 흐름도



## 산업안전분야 컨설팅

###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

### 2. 공정안전보고서

-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행하여 중대산업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

###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 4.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5. 자율안전확인신고

-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6. 방폭안전진단

- 전기설비가 원인이 되어 가연성 가스, 증기, 분진에 인화되거나 착화되어 발생하는 폭발사고 방지하기 위한 안전진단

### 7.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



#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OS 45001, KOSHA MS)

## 안전보건경영이란?

-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조건과 국제표준(IOS 45001) 기준체계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권고를 반영한 안전보건경영체제로,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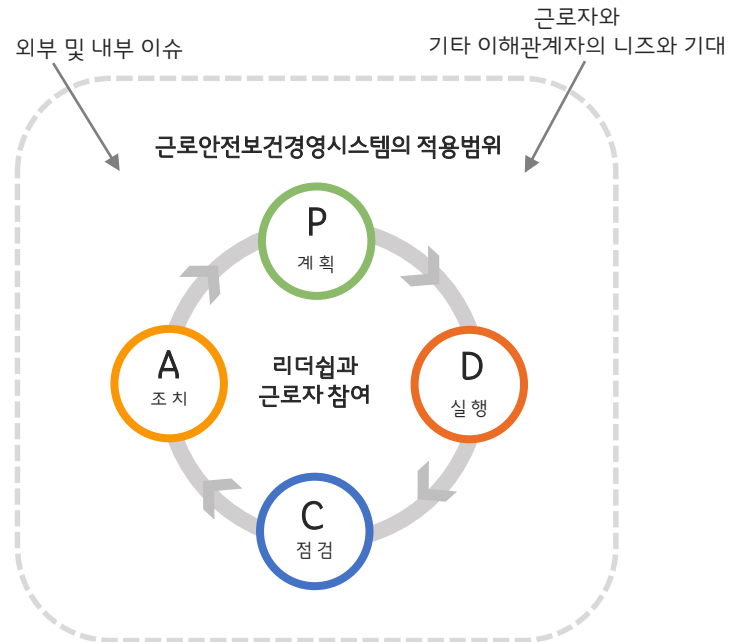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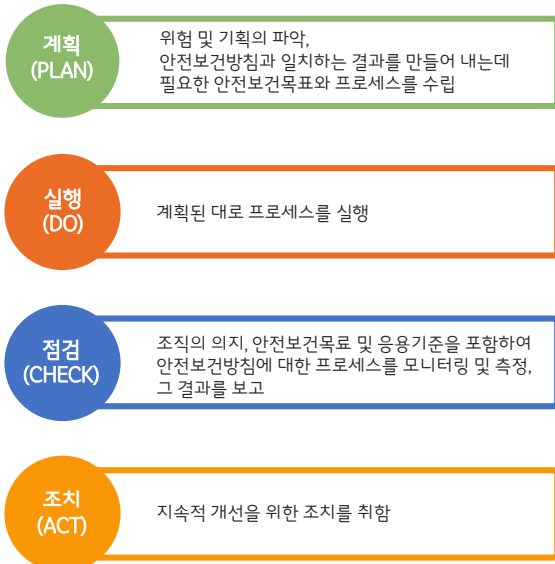
## 인증심사항목

- 안전보건경영체제분야(27개 항목)
- 안전보건활동수준분야(14개 항목)
-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 분야(6개 항목) 등 47개 항목의 판단기준에 의해 심사를 실시

## 인증취득효과

- 국제적 통용 수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
-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자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여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추진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실현
- 과학적 위험성 평가기법 도입으로 체계적인 위험관리체계 구축
- 재해와 작업손실의 감소로 재해보상액 감소, 생산성 및 품질향상, 근로자 복지개선에 기여
- 내·외부 고객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손실감소효과의 극대화 및 급변하는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 안전보건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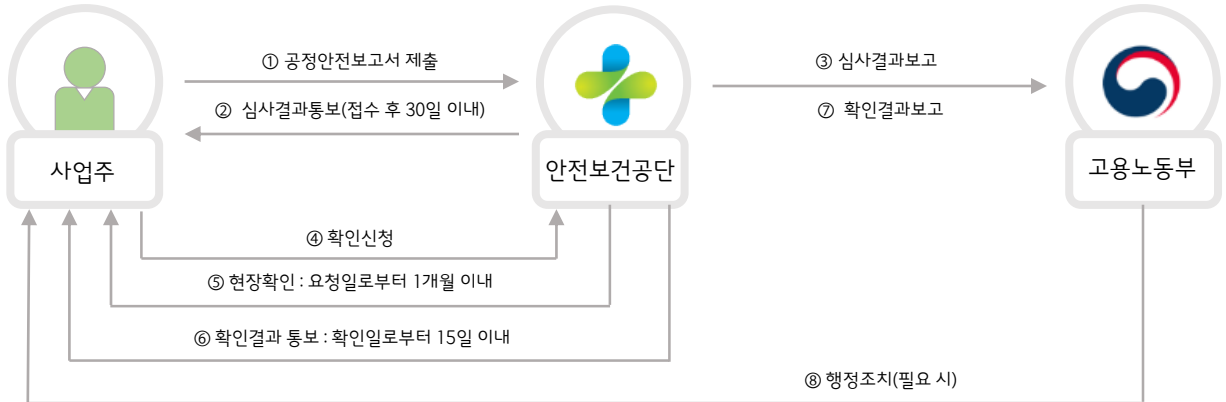
- ① 계획 (PLAN): 사업장에서의 위험 및 기회를 파악하고 안전보건방침과 일치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안전보건목표와 프로세스를 수립한다.
- ② 실행 (DO): 계획에 따라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 ③ 점검 (CHECK): 기업 조직의 의지, 안전보건목표와 응용기준을 포함하여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및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 ④ 조치 (ACT):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 2. 공정안전보고서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심사 및 확인 절차



### 제출대상 · 시기 · 서류 · 방법

제출주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출 시기: 착고일 30일 전

제출서류: 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55호 별지 1호 서식)  
2. 공정안전보고서 2부

제출방법: 사업장 소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수수료 입금 > 공정안전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 >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

※ 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http://www.kosha.or.kr)) > 사업안내/ 신청 > 전문기술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확인

※ 관련 법령, 신청서 및 제출 서식, 작성 예시집 등 제공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업종	업종분류 코드	업종	업종분류 코드
원유정제처리업	19210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조실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기타 석유정제출 재처리업	19229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 비료 제조업 (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31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제로만 해당)	2032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관련 별표 13,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물질을 하루동안 최대로 규정수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설비

###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출대상 사업장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10***	식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262**	전자부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가구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3***	기타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설비 대상

아래의 설비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장

- ① 금속이나 그밖의 광물의 용해로
- ② 화학설비
- ③ 건조설비
- ④ 가스집합용접장치
- ⑤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 제출자 및 제출시기

**제출 주체 :**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출 시기 :**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 이전 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 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함



# 4. 위험성평가

##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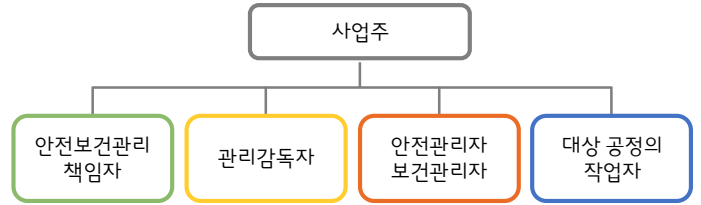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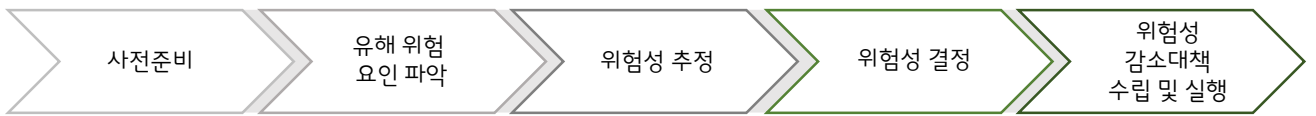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② 관리감독자
- ③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④ 대상공정의 작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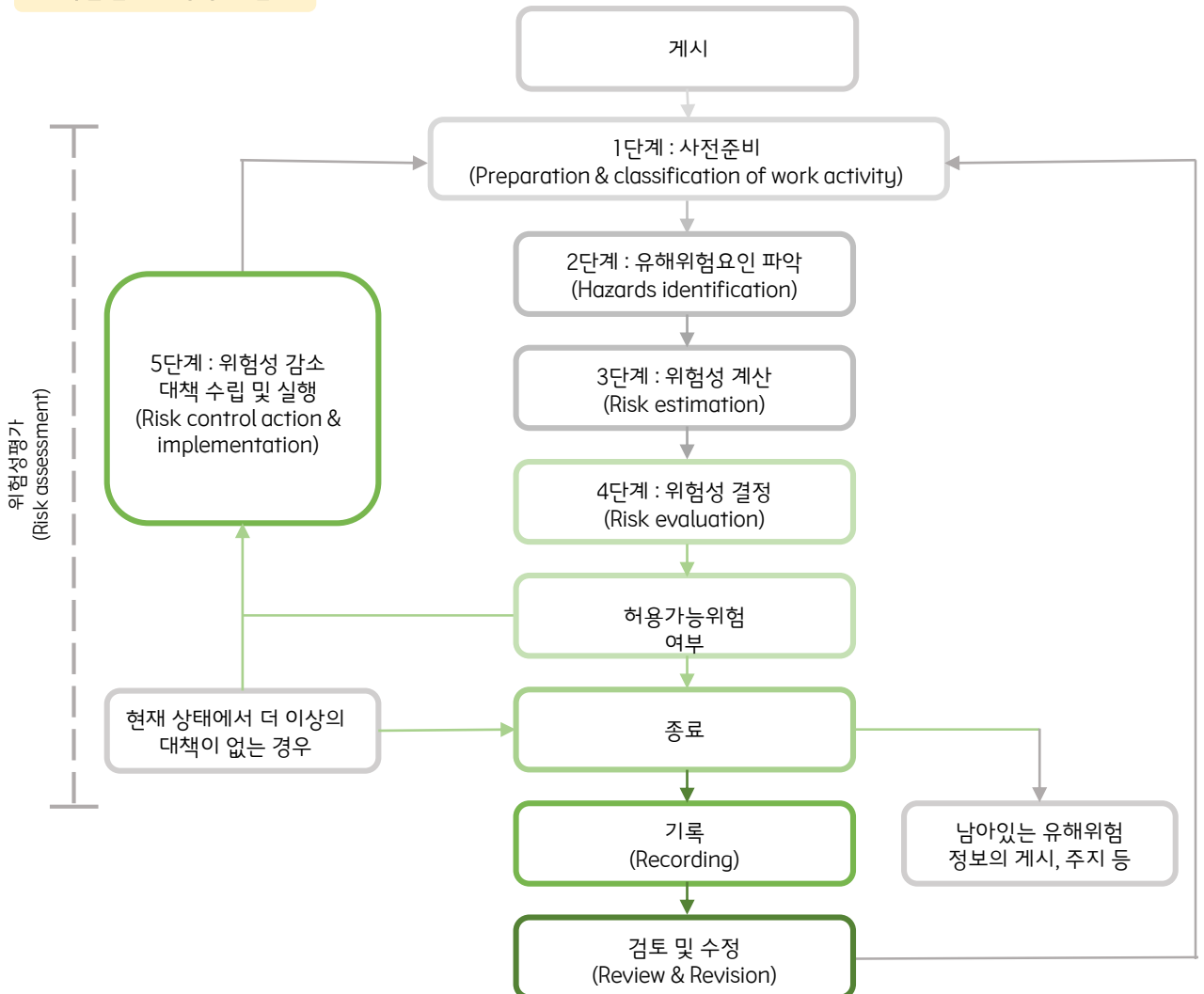
①~④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



## 위험성평가 절차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절차



## 5. 자율안전확인신고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89조 (자율안전확인 신고)~제92조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89조(자율안전확인 신고)~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0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 신고제출서류

-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제품의 설명서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서 (시험·검사 결과서의 경우 신고자가 관련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자체시험·검사결과서로 대신 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6. 방폭안전진단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제출대상

전기설비의 방폭(폭발방지)이란 전기설비가 원인이 되어 가연성 가스나 증기 또는 분진에 인화되거나 착화되어 발생하는 폭발사고를 방지하는 것

###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대상

- 기설치된 방폭설비 진단
- 신설하고자 하는 방폭설비에 대한 진단 및 시공감리
-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 방폭진단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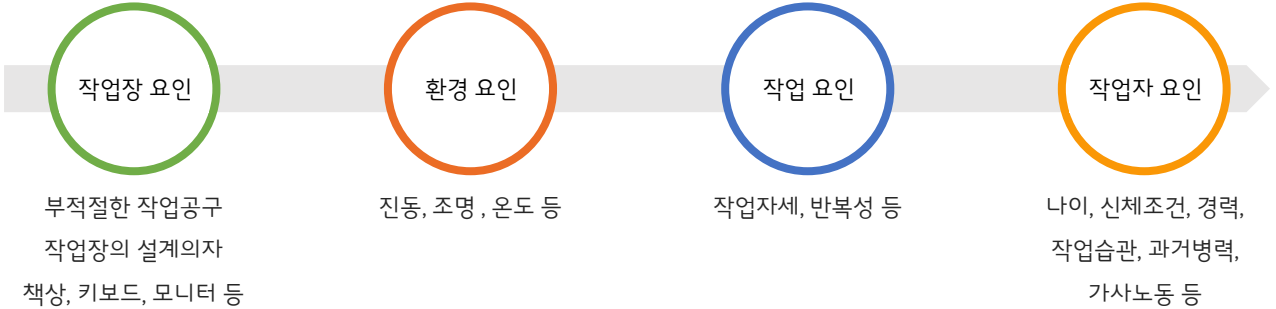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 C IEC 60079-10-1에 따른 폭발위험지역 구분
- 방폭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7.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보건조치)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 근골격계질환 발생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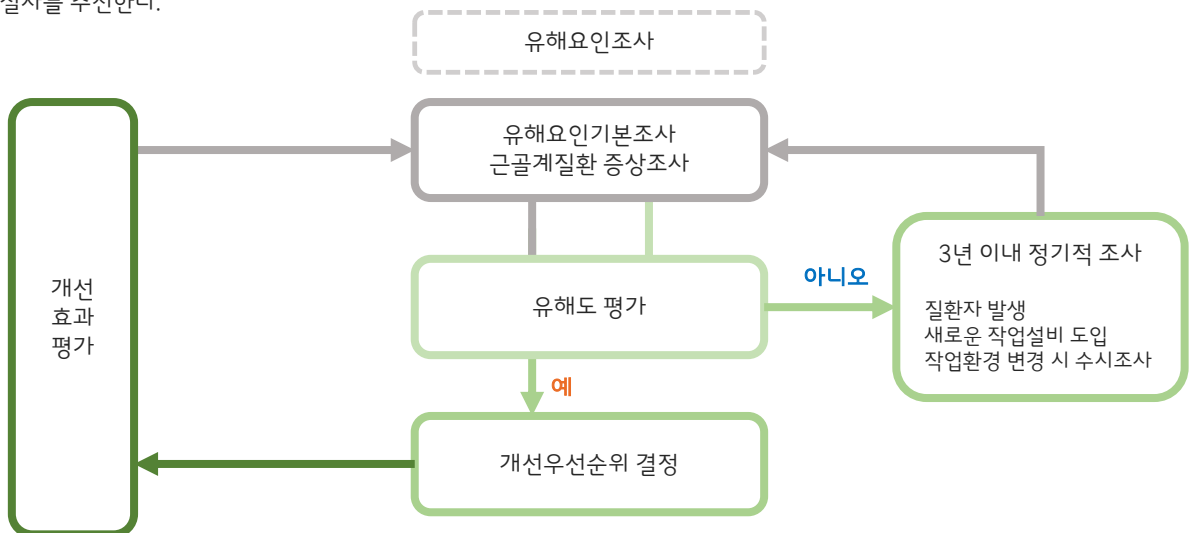


## 유해요인조사 시기

- 정기 유해요인 조사 :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
- 수시 유해요인 조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 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유해요인조사방법 및 절차

- 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작업형태와 동일한 작업조건인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부작업에 대해서만 단계적 유해요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유해요인 조사는 크게 유해요인 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를 위하여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양식과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양식을 사용한다.
- 유해요인 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결과 추가적인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상황에 맞는 정밀평가(작업분석 · 평가)도구를 이용한다.
- 유해요인 조사 결과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위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개선대책 수립 및 실시 등의 절차를 추진한다.



Tel . 1800-8133

Fax . 070-7611-6133

E-mail . aestiz99@gmail.com

Home . www.koesti.or.kr

---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76, 6동 204호



환경안전교육원  
홈페이지  
QR code

